



제40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령의 계산 및 표시방식 규정〉

-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53호)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631호)

2022.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심정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3. 관계기관의 의견	11

I. 제안경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회부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명	2022. 4. 13.	2022. 4.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38인	2022. 5. 17.	2022. 5.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광온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매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인 이른바 ‘세는 나이’를, 「민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률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등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한 연령 계산방식인 ‘만 나이’를,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및 외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에 따른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시기의 출산기피 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여러차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연령의 계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2. 유상범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적 관계에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표시 방법)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만(滿) 나이’ 방식으로 연령의 계산과 표시를 하도록 규정 하려는 것임.

현 행	박광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第158條(年齡의 起算點) 年齡計算에는 出生日 을 算入한다. <신 설> <신 설>	第158條(연령의 起算點 등) ① ----- ---산입하여 역(歷)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 연령을 표시할 때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연수를 계산하고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는 경우에 는 연수에 포함된 마지 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연령의 계산 및 표 시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8조(연령의 계산과 표시) ① 연령의 계산 은 만(滿) 나이로 한다.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 다. 다만, 1세에 이르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입법 배경

“나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年齡)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출생일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는 무관하게 1살씩 증가시키는 계산 방법인 “세는 나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함.

이와 달리 연령을 계산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만 나이”가 있는데, 생일을 기준으로 0세에서 시작하여 1년(365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인 연령 계산 및 표시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식임.

또 다른 방식으로,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하는 “연 나이”가 있는데, 이 방법은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법 중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¹⁾ 및 「병역법」(제2조)²⁾, 「민방위기본법」(제18조)³⁾ 등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사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이하 각 호 생략)

용하고 있음.

나이 계산의 한 예로 1995년 9월 10일생은 현재 2022년 9월 8일이라고 할 때 세는 나이로는 28세, 만 나이로는 26세, 연 나이로는 27세가 되는데,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방식과 공식적인 법률 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각각 달라 대국민 정책 수행과정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1】

【나이 계산의 예시(1995.9.10.생)】

연도		2022년		2023년	
기준일		2022년9월10일 이전	2022년9월10일 이후	2023년9월10일 이전	2023년9월10일 이후
연령 (세)	세는 나이	28	28	29	29
	만나이	26	27	27	28
	연나이	27	27	28	28

이처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자는 논의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음⁵⁾.

같은 맥락에서,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 연령 계산 및 표시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6월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948호)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임.

5) 연합뉴스, “내년엔 나이 한두살 줄어들까...인수위 만 나이 통일 추진(종합)”, 2022.4.11.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등에 각각 ‘만 나이’ 계산 규정과 표시 규정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임.

나. 현행 「민법」 규정 및 입법 필요성 검토

현행 「민법」은 기간의 계산에 있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 기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또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하는 장기간에 대해서는 역일(曆日)을 단위로 하는 역법적(曆法的) 계산법을 택하면서⁷⁾ 일반적으로 기간의 초일(初日)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⁸⁾하고 있는데, 연령에 관하여는 초일에 해당하는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기산점에 관한 규정⁹⁾을 별도로 두고 있음. 기간의 역법적 계산법 및 연령 초일 산입에 따라 현행 「민법」은 “만 나이”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민법」은 제4조(성년)¹⁰⁾, 제807조(혼인적령)¹¹⁾,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¹²⁾,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¹³⁾, 제906조

6)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7)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8)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10)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1)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12)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는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과양 청구권자)¹⁴⁾,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¹⁵⁾, 제1061조(유언적령)¹⁶⁾ 등의 조문에서 연령을 연수(年數)로 표시하고 있고, 개별 조문의 문구에서 “만(滿)”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음.

정리하면, 현행 「민법」의 연령 계산점에 대한 명문 규정과 연령 표시를 연수로 표시하고 있는 개별조문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민법」은 이미 연령을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음. 이처럼 공식적인 법률관계나 공문서는 「민법」에 근거하여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한국식 세는 나이가 통용되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 관습 및 문화적 맥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연령을 표현하는 방식과 한국식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형·누나” 등 호칭 등을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식 ‘세는 나이’ 사용의 폐지 및 ‘만 나이’ 통일 여부의 문제는 현행 규정 외에도 국민의 인식 변화¹⁷⁾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개정안은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13)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14) 제906조(과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과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과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과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과양을 청구할 수 있다.

15)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16)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17) 참고로, 사회적 관습을 법 개정 등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은 보행자 우측통행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09년 국토해양부는 보행자의 안전·편의 및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우측보행을 홍보하였고, 서울시내 지하철을 대상으로 우측보행 시범운행을 하였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우측통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후 기존 좌측통행 기준 에스컬레이터 운영 등 일시적인 혼란이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행문화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됨.

「민법」에 나이 계산 및 표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 개정안의 체계·자구 검토

첫째, 용어와 관련하여 박광온의원안은 “연령”을, 유상범의원안은 “연령”과 “나이”를 혼용하고 있는데, 법률 용어의 한글화 차원에서 “나이”로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제1편 총칙 제6장 기간 중 제158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나이와 기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박광온의원안의 경우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는 기존의 민법상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고, 유상범의원안은 연령의 계산은 만(滿) 나이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함. 나이는 기간 계산의 특수한 경우로서 사람의 출생일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2건의 개정안은 모두 안 제158조제2항의 단서로 연수(年數) 외 잔여일이 있는 경우 또는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항을 구성하여 나이의 계산 시 1년에 이르지 못한 월(月) 수가 있는 경우 “개월 수”나 “연 및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간 계산의 특수한 경우로서 나이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초일인 출생일을 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 제161조¹⁸⁾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유상범의원안과 같이 현행 제807조 및 제1061조 등 법 문언에서 “만 00세”로 나이를 규정한 부분의 “만” 자구를 삭제하여 법 문언에서도 나이를 통일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 행	박광온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전문위원 수정의견
第158條(年齡의 起算點) 年齡計算에는 出生日을 算入한다.	第158條(연령의 起算점 등) ① 年齡計算에는 出生日을 산입하여 歷(歷)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 연령을 표시할 때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연수를 계산하고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에 포함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월수	제158조(연령의 起算과 표시) ① 연령의 계산은 만(滿) 나이로 한다.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제158조(나이의 起算 및 표시) ① 나이는 출생일 이후 지난 기간을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② 나이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의 계산에서 1년에 이르

18) 제157조(기간의 起算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연령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 못한 월수(月數)가 있는 경우 나이를 1세 미만의 개월(個月) 수로 표시하거나 1세 이상의 연수와 개월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나이는 제외한다)----- ----- ----- ----- --.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18세----- ----- --.	제807조(혼인적령) 18세----- ----- --.
第1061條(遺言適齡) 滿17歲에 達하지 못한 者는 遺言을 하지 못한다.		第1061條(遺言適齡) 17歲----- ----- -----.	第1061條(遺言適齡) 17歲----- ----- -----.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차이는 출생 연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고 현행 제158조의 초일산입의 원칙은 만 나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158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 나이에 관한 조항은 제158조의2를 신설하는 등 별도의 가지조문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즉, 제185조의2만 신설하여 “제158조의2(연령의 표시) 연령은 만(滿) 나이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의견임.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임. 다만, 현행 「민법」은 이미 나이를 세는 방법으로 ‘만 나이’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기존 「민법」 규정과 개정안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구체적으로 박광온의원안 제158조제1항은 출생일을 산입하고 역에 의한 계산을 규정하는 현행 제158조 및 제160조제1항과, 제3항은 민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현행 제155조와 내용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전달함.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헌법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세는 나이와 관련한 우리의 관습이 헌법적으로 보호되어 계승 및 발전되어야 할 전통문화에 해당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등), 이에 비추어 볼 때 “세는 나이” 방식은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커 보이고 오늘날에 있어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4

【참고자료1】 연령 계산 관련 법적 분쟁 및 국민 불편 사례

①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사례)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 (분쟁이 장기 계속)

노사 단체협약상 “56세”의 의미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만 56세”라고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②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사례)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 이해 혼선

-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나,
 - 별도의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 발생 → ‘만 나이’가 일상화되면 분쟁 발생 소지 사전 차단

“26세 이상” 연령한정 운전특약상 나이 계산법을 ‘세는 나이’로 생각하고 계약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특약내용 설명의무 이행 입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③ (방역 관련 혼선 사례)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대상 관련 현장 혼선

-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예약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연 나이’ 적용) 미만’의 해석과 관련
 - 접종 현장 병원에서는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 발생
-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기준 안내 관련 민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 부담 증가

④ (행정 현장 혼선 사례) 일선 행정에서의 나이 계산법 관련 민원 발생

- (평택시) 나이 계산법 혼선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나이 계산법 일원화(‘만 나이’로 통일) 건의

⑤ 그 밖의 불편 사례

-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로 기재된 경우
 - 의약품의 섭취량·투여량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만 나이’ 기준)한데, 나이 계산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혼선(‘만 나이’, ‘세는 나이’)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
- ‘세는 나이’의 단점·불편에 따른 ‘만 나이’ 통일 요청 국민청원 다수(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 200개 이상)

【참고자료2】 해외 입법례

- (일본) 일본은 「연령 계산에 관한 법률」로 연령을 출생일부터 기산하고 역법(曆法)적 계산법을 따르도록 하며,
- 「연령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두어,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하는 종래의 관습을 변경하여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함

(일본) 「연령 계산에 관한 법률」

- ①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
- ② 일본 민법 제143조의 규정(역법적 계산법)은 연령 계산에 준용한다.

(일본) 「연령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1949. 5. 24. 제정)

- ①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민은 태어난 해를 한 살로 하여 세는 나이에 따라 연령을 표시하는 종래 관습을 바꾸어 연령 계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년수(1년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연령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은 전항에 규정하는 년수 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종전 방식(태어난 해를 한 살로 하여 나이를 세는 방식)에 의하여 연령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법률은 1950. 1. 1.부터 시행한다.

- (독일) 독일은 「민법」에서 연령 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하고(제187조 제2항), 역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제188조 제2항)

* 명시적으로 ‘역’ 또는 ‘역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제188조 제2항의 해석상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결과가 도출됨

※ 독일 등 서구권 국가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령 표시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독일) 「민법」

제187조(기간의 개시) ② 어느 날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날은 산입된다.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88조(기간의 종료) ② 주, 월 및 수개의 월을 합친 시간, 즉 연, 반년, 사반년으로 정하여진 기간은, 제187조 제1항의 경우에는 최종의 주 또는 최종의 월에서 그 명칭 또는 수에 의하여 그 사건 또는 그 시점의 당일에 상응하는 날의 경과로써 종료하고, 제187조 제2항의 경우에는 최종의 주 또는 최종의 월에서 그 명칭 또는 수에 의하여 그 사건 또는 그 시점의 당일에 상응하는 날의 전날의 경과로써 종료한다.
